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49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곽향기, 김경훈, 김성준, 김재진, 남궁역,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송도호, 이민옥, 이병도, 이소라, 이영실, 이은림, 임규호, 임만균,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의원(20명)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사용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생 략)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 의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문서번호	20231013000000024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봉양순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3.	
회 신 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위탁운영 등)제2항 중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